해 양 수 산 부 통 보

제 목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계기관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내 용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생산력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각 시·군²⁰¹⁾은 [표 1]과 같이 수산종묘방류사업(국비 70%, 지방비 30%)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천원) 품 종 년 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2,446,490 1,790,356 656,134 2013 쏘가리 등 9종 840.040 590.178 249.862 쏘가리 등 11종 2014 773,950 541,178 232,772 2015 감성돔 등 15종 832.500 659.000 173.500

[표 1]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현황

1. 수산종묘 질병검사 부적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의 관한 관리규정」제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는 통보받은 즉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이하

²⁰¹⁾ 감사원 수감 지자체는 중복감사 방지 차원에서 제외(강릉시, 동해시, 춘천시, 속초시, 태백시, 홋천군)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시·도에 통보하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산종묘 납품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류대상 종묘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묘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 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장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 각 시·군에서는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매입하기 위하여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묘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를 사전 현지 확인하고 전염병검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은 [표 2]과 같이 최근 3년간 7건에 대해서 검사기관의 질병검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산종 묘방류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수산종묘매입 질병검사 완료전 계약체결 내역

시군	품종	사업비(천원)	질병검사 완료일	계약체결일
횡성군	동자개	20,000	'15.9.7	'15. 9. 2
	다슬기	10,000	'15.7.27	'15. 7. 24
정선군	쏘가리	35,710	'14.8.5	'14. 7. 18
	뱀장어	18,400	'15.7.3	'15. 6. 16
	메기	9,200	'15.7.3	'15. 6. 17
양구군	참게	20,000	'13.6.18	'13. 6. 14
	동자개	20,000	'14.7.21	'14. 7. 15

2. 수산종묘방류 시기 부적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수산종묘의 방류시 자연환경에 적응력 및 생존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묘의 품종별 방류시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방류품종이 작황부진,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가 불가능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생태계 보전, 시험방류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구군은 [표 3]과 같이 2015년 뱀장어 방류 시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이사장과의 협의 없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시기를 위반하여 방류하 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수산종묘 방류시기 위반 내역

시・군	품종	사업비(천원)	방류일자	지침상 방류시기
양구군	뱀장어	40,000	'15. 8. 27	3~7월

조치할 사항 횡성군수, 정선군수, 양구군수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시 사전 질병검사, 어종별 방류시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